

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 기구의구성·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2. 18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2월 7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2월 11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2. 18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 이 상 도)

가. 제안이유

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”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두되, 위원은 재난 관계 행정기관·단체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,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함. (안 제2조 내지 제6조)
- 위원회 회의 안전의 사전검토 및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. (안 제7조)
-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(안 제9조 및 제10조)

-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,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, 부구청장을 차장으로, 재난 유형별 통제관·담당관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며, 재난의 유형에 따른 수습주무부서의 지정 및 실무반의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 (안 제15조 내지 17조)
-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때에 운영함. (안 제18조)
-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,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함. (안 제22조)
-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종로구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,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함. (안 제23조 내지 제29조)
- 서울특별시종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. (안 부칙 제2항)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- 김 성 배 위원외의 수정안 동의

6. 修 正 案 의 要 旨

○ 수정이유

- 실무위원회 구성인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수를 40인 이내로 규정하였으며,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 별도의 수당이나 여비 지급은 적절하지 못하여 수당지급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하였음.

○ 수정안 본문

안 제7조중 제7제2항 내지 제5항을 제7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실무위원회 위원은 4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안 제12조중 “구 소속직원인 위원”을 “공무원인 위원”으로 한다.

7. 審 査 結 果 : 수정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	안	수	정	안
제7조(실무위원회) ① (생략)	제7조(실무위원회) ① (원안과 같음)			
	<u><신설></u>			②실무위원회 위원은 40인 이내로 구성한다.
② (생략)				③ (원안 제2항과 같음)
③ (생략)				④ (원안 제3항과 같음)
④ (생략)				⑤ (원안 제4항과 같음)
⑤ (생략)				⑥ (원안 제5항과 같음)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 등의 회의에	제12조(수당 등) -----			
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	-----			
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	-----			
있다. 다만, 구 소속직원인 위원이	----- 공무원인 위원 -----			
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	-----			
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-----			